

2004 주요업무보고

2004. 2

건 설 관 리 과

報 告 順 序

- 2003 主要業務推進實績

- 2004 主要業務推進計劃

2003 主要業務推進實績

1. 도로 등 공공용지 관리(12.31현재)

점용료 징수실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목 표 (A)	조 정 (B)	징 수 (C)	진 도 율(%)		
				A:C	A:B	B:C
계	3,213,422	4,572,025	3,574,151	111.2	142.2	78.2
도로점용료	2,811,706	3,730,736	3,132,696	111.4	132.7	83.9
하천점용료	118,702	219,017	179,424	151.1	184.5	81.9
과 태 료	82,000	466,537	125,180	152.6	568.9	26.8
임대 수입	18,032	32,498	13,614	75.5	180.2	41.9
과년도수입	182,982	123,237	123,237	67.3	67.3	100.0

(시징수교부금 예산액 471,650천원 별도)

무단 도로점용행위 적발조치 : 126건 158,925천원 변상금부과

체납 세외수입 정리 조치사항

○ 전국 직장조회 : 2회 2,590건 ○ 부동산 압류 : 12건 49,298천원

○ 차 량 압 류 : 204건 34,902천원 ○ 결 손 처 분 : 1,822건 1,264,223천원

도로점용 민원처리 현황(12.31현재)

(단위 : 건)

총 계	도 로 점 용 허 가					도 로 일시점용 허 가	허가사항 명의변경
	계	차량출입 시 설	사설안내 표 지 판	어 스 카 양	지 하 매설물		
489	312	277	15	5	15	147	30

전문건설업 갱신신고 접수 처리 (12.31현재)

(단위 : 개소)

관리대상업체	갱신신고대상	접수 및 갱신처리	미신고업체 등록말소	기타 (전출 및 반납)
631	516	405	84	27

2. 가로정비 및 관리(12.31현재)

노점상 단속 및 정비

(단위 : 건)

합 계	단 속 유 형 별			
	포장마차	손 수 레	좌 관	차 량 영 업
41,780	1,007	17,495	12,960	10,318

※ 강제수거 : 5,349건 (포장마차 55, 손수레 535, 가스통 399, 기타 4,360)

※ 여의도 벚꽃행사 정비실시(4.1~4.15) : 1,389건(수거 514, 이동조치 875)

조광·영일시장 단속 및 정비실적

(단위 : 건)

노 점 상					노 상 적 치 물				
계	포 장 마 차	손 수 레	좌 관	차 량 노 점	계	상 품 적 치	시 설 물 제 거	파 라 솔 차 양막 핸드카	물 품 거
2,248	9	159	1,213	867	26,924	23,862	0	3,015	47

행정 조치 실적

(단위:천원)

변 상 금		과 태 료		고 발
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
798	176,711	773	125,750	67

노점상 정비 홍보추진실적

- 구청장공한문 : 7,000매 ○ 한강케이블 방영 : 2회
- 리후렛 제작 배포 : 3,000매 ○ 구소식지 게재 : 5회
- 구 홈페이지게재 : 공지사항 등재

가로정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실적

(단위:건)

계	진 정 민 원	전 화 민 원	인 터 넷 민 원	모 니 터 요 원	건 문 사 항	환 경 순 찰	신 문 고
3,418	44	1,206	158	0	422	1,588	0

3. 광고물 관리(12.31현재)

옥외광고물 표시허가(신고) 처리 현황 (단위 : 건)

계	옥 상	지 주	들 출	가 로 세 로	현수막	공 연	기 타
5,808	37	166	1,655	773	2,033	248	896

도로공간사용료 부과실적 (단위 : 건/천원)

계		시 수 입		구 수 입	
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2,145	254,597	1,785	162,835	360	91,762

광고물 심의 위원회 처리실적

- 본심의(대형) : 12회 116건 심의(원안가결 84, 조건부가결 26, 권고 5, 부결 1)
- 소심의(기타) : 51회 1,276건 심의(원안가결1,095 조건부가결 160, 부결 21)

옥외광고업자 정비 실적

- 옥외광고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처분
 - 대 상 : 2002년 옥외광고업 보수교육 미 이수자 22명
 - 조치내용 : 대상업자 1인당 25만원씩 총 550만원 부과조치('03.4.10)
- 옥외광고업 무단 폐·휴업후 변경신고 미 이행자 조치
 - 대 상 : 변경신고 미 이행자 146명
 - 조치내용 : 46건 자진변경신고(폐업포함),
110건 영업정지(1개월) 처분통지('03.6.26)

4. 불법광고물 정비(12.31현재)

□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

구분	정비(건)	이행강제금 부과		비고
		건	금액(천원)	
2003년	5,411	93	92,990	
2002년	10,995	38	22,100	

□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

구분	정비				과태료부과	
	계	입간판	현수막	에어 라이트	건수	금액 (천원)
2003년	33,572	787	32,696	89	509	146,425
2002년	38,201	7,138	31,025	38	370	76,243

□ 학교주변 클린존 지정 관리(정비)

- 정비지역 : 관내 16개교 초,중등 학교주변(초10, 중4, 고2)
- 정비(단속) 인력
 - 공공근로 : 연480명
 - 구기동반 : 연600명
- 정비내용 : 음란전단 등 불법광고물 제거
- 관리실적
 - 예방활동
 - 홍보 현수막 설치 : 16개 학교주변 28개소
 - 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 : 전신주 등 496개소
 - 정비사항 : 벽보,전단, 프랑카드 등 24,000건
 - 행정처분: 과태료 40건 30,000천원 , 고발 4건

2004 主要業務推進計劃

I. 공공용지 관리기능 유지 강화

1. 도로 및 구거부지 등 무단점유 일상점검 확행

건물주, 점포주 등이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는 공공용지에 대하여 일상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공용지 본래 기능을 확보하고 상습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도모

□ 공공용지 현황

계	도 로	하 천	구 거
2,484건	2,295건	65건	124건

□ 점 검 대 상

- 도로(일시 및 계속) : 주택·점포 등의 계속점유 적정여부 등
- 구 거(하 천) : 부과누락 및 초과 사용, 명의변경, 폐쇄처분 등

□ 점 검 방 법

- 기동단속반이 가로환경순찰 및 정비 시 일상점검
- 유관부서의 허가 통보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점검
- 공공용지 무단사용에 대한 현황측량 등으로 숨은 자원 적극발굴

□ 무단점유자 조치

-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
- 고질·상습자는 도로법에 의거 고발

② 세외수입 징수 강화

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증대 도모

(단위:천원)

구 분	부 과	징 수(목표)	징수율(%)
계	3,387,081	3,130,026	92.41
도로점용료	3,130,584	2,898,688	92.59
하천점용료	128,372	121,106	94.33
임대 수입	18,032	18,032	100
도로법과태료	29,950	21,700	72.45
건설업과태료	6,500	6,500	100
광고물과태료	73,643	64,000	86.90

- 도로 및 구거부지 등 무단점유 일상점검 확행으로 세수증대
- 차량출입시설 등 도로점용 일제조사 철저
- 공공용지 무단사용에 대한 숨은 자원 적극 발굴 등

과년도 체납정리 일소 강화

(단위:천원)

구 분	체 납액	목 표액	비 고
계	1,883,455	196,442	
도로점용료	1,116,117	159,493	
하천점용료	120,512	8,288	
도로법과태료	290,432	14,380	
건설업과태료	116,473	4,517	
광고물과태료	239,921	9,764	

- 체납 징수 독려반 년중 지속운영 ⇒ 2개반 6명
 - 건별 현장조사 및 주민등록 실사를 통해 소재파악 확인
 - 고질·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집중관리
-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재산 소유자 행정처분 강화
 - 전국재산·직장조회 : 년 6회 이상
 - 재산 소유자 압류 : 부동산·차량·급여 등
- 시효 및 불납결손
 - 5년경과 체납자 및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인 자

③ 차량출입시설 등 도로점용 일제조사

공공용지에 시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출입시설 등의 각종 무허가 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토록하고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도로 기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조사대상 현황 -- 1,293건

차량출입시설	지하매설물	사실안내표지판	비 고
1,134건	44건	115건	

조사기간 : 년2회 이상

- 1차 : 2004. 1월 ~ 3. 31(점용료 정기부과)
- 2차 : 2004. 4월 ~ 6. 30(사실안내표지판 일제정비)
- 3차 : 2004. 10월 ~ 12. 31(변상금 정기부과)

중점조사 내용

- 동별 허가대장에 의거 허가여부 확인
- 명의를변경, 허가면적 초과, 구조 및 시설 변경여부
- 시설 파·훼손, 보행 및 교통소통 지장 여부
- 철판, 목재를 이용한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 등

조사결과 조치

- 은의재산 및 무단시설물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
- 허가면적 초과 사항은 원상복구와 변상금 부과 병행
- 시설물 파·훼손자는 고발 등 행정조치

4 전문건설업체 및 골재채취업체 지도감독 강화

전문건설업체의 주기적 등록신고에 대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관내 소재한 골재채취업체에 대해서도 제반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관리근거

-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2003.8.21) 및 골재채취업법

대상업체 현황 -- 558개업체 966개업종

전문건설업체		골재채취업체	
업체 수	업종 수	업체 수	업종 수
544	944	14	22

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된 주요 내용

-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 증액
- 철도·궤도 공사업의 시설·장비기준 상향

사후관리

- 자본금,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강화된 등록기준 일체를 충족하도록 각 대상업체에 안내문 발송
- 갱신신고 미접수업체와 강화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,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
-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소재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 확인으로 무단전출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

II. 가로환경 정비기능 유지 강화

I. 노점상·노상적치물 정비

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보·차도에서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집중정비·감축하여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□ 중점관리대상 -- 총 2,098개소(노점517, 적치물1,581)

절대금지구역		상대금지구역		기 타	
노 점	적치물	노 점	적치물	노 점	적치물
63	206	378	267	76	1,108

□ 정비방향

- 노점의 규모, 형태, 장소별 차별화하여 정비대상 지정관리
- 절대금지구역내의 시설, 적치물 정비단속을 우선 집중 실시
- 노점상 상담 전업지원 센터 활성화 및 대시민홍보 실시

□ 중점 정비지역

- 보행불편 심화지역
 - 보도, 횡단보도, 버스정거장, 지하철역 출입구, 시장입구 등의 절대금지구간내의 기업형, 대형노점 및 안전위해 노점 등
- 민원다발 집중 지역
 - 시민불편신고, 인터넷신고, 순찰지적지역 등

□ 정비방법

- 중점 정비지역 특별상시 관리
 - 대상 : 영일·조광시장, 여의도, 삼각지 등 단속 취약지역
 - 인력 : 단속반원 및 용역원(15명) 집중 투입
- 노점(포장마차) 이용안하기 등 대시민운동 전개로 홍보 강화
- 야간, 새벽 단속강화로 마찰(충돌) 최소화(월8회이상)

- 기업형, 대형노점 및 고질·상습 위반자는 과태료·변상금 및 고발병행
- 차량포장마차의 증가에 따른 유관기관(부서) 합동단속 등 응원체제 강화

□ 노점방지시설 구축 등 사후관리 강화

- 대상 : 여의도역 주변 및 단속정비 취약 구간
- 종류 : 버스승차대기준, 블라드, 쉼스, 이동식수림대(화단) 등

□ 노점상 상담전업지원 센터 운영 내실화

- 현행 지원체제를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인식전환 제고
- 지원규모와 지원자격, 조건 등을 완화토록 적극 검토(건의)

□ 단속적용법령의 비현실적 부분을 개정토록 건의

- 도로법시행령 중 적치물 반환, 미반환 적치물의 귀속 등

□ 단속(정비) 용역인력 활용

- 현행 단속공무원 : 19명(일반직2, 기능직4, 운전원2, 지도원11)
(50대:10명, 40대:7명, 30대:0)
- 필 요 성 : 대부분 고령층에 속하여 현장에서의 강력한 단속이 곤란
- 소요인력 : 15명(1일 기준)
- 용역일수 : 주간 180일, 야간 90일
- 소요예산 : 총계 216,000천원
 - 주간 : 162,000천원(60,000원x15명x180일)
 - 야간 : 54,000천원(40,000원x15명x90일)

2 영일·조광시장 특별 정비

보·차도상의 만성적인 물품적치, 불법주차,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시민의 보행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바, 지속적인 정비로 보행로 확보 및 차량소통의 원활화 도모

□ 현 황

○ 구 간

- 농협 영등포지점 ~ 영등포 고가 (550m) 간선변 및 영중초등교 주변

○ 정비대상 : 1,258개 점포 (영일 766, 조광 492)

□ 중점 정비대상

○ 보·차도상 과일 등 물품적치, 파라솔, 이중차양막 등 설치행위

○ 차도상 핸드카, 손수레 방치행위

○ 보도상 상행위 등

□ 정 비 방 법

○ 영등포 청과등 6개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정비 유도

○ 각 점포에 자율정비 참여촉구 구청장 공한문 발송

○ 계절별(수박철,김장철 등) 특별정비 대책강구

○ 기동단속반(2개조 14명) 및 용역관리 인력(1일15명내외) 집중 투입

○ 유관부서 합동·공조정비 체제강화(경찰서, 교통지도과, 청소과)

※ 『강서농산물도매시장』 입점에 따른 가설물 자진철거 등 사후관리

□ 불법행위자 행정 조치

○ 보·차도상의 파라솔, 바레트 등 고정시설물 강제수거

○ 상습·고질적인 점포주는 과태료, 변상금 부과 및 고발병행

3. 보도상 영업시설물 중점 관리

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환경을 조성

□ 시설물 현황 : 총 241개소

○ 가로판매대 86, 교통카드판매대 43, 구두수선대 112

□ 추진 사항

○ 상시점검 체제 구축

- 정 기 : 년 2회 이상 (상·하반기)
- 수 시 : 매월 1회

○ 중점 점검 사항

- 전대·전매, 허가장소 임의변경, 시설물 구조변경 여부
- 허가 면적 이외 장소에 상품 및 기타 물건적치·판매행위
- 음식물 조리, 가스사용, 금지품목 판매행위 등

○ 위반자 행정조치

- 동일위반으로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다시 위반행위 적발시 허가 취소
- 허가 취소된 영업시설물의 철거 및 변상금 부과

Ⅲ. 광고물 관리 및 정비 지속 추진

Ⅰ 광고물 안전점검과 수준향상 및 불법광고물 발생요인 개선

대형·난립으로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업자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광고물 수준을 향상시키고,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도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□ 옥외 광고업자 정기교육 실시

- 교육 대상 : 250명('03.12. 31 현재)
- 교육 시기 : 2004년 6월~8월
- 교육 방법 : 한국교육사업협회에 위탁교육
- 교육 내용 : 광고물 관련 법규 및 광고업자 준수사항 등
- 불참자 조치 : 과태료 부과(1인당25만원) 등 조치 후 보수교육 실시

□ 옥외 광고업자 일제정비

- 정비대상 : 무신고 광고업자 및 무단 폐·휴업후 신고 미이행자
- 정비시기 : 2004년 3월~6월
- 정비방법
 - 무신고 광고업자 :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불응시 고발
 - 무단 폐·휴업자 : 단계별로 영업정지후 불응시 영업폐쇄조치
 - 1차위반 : 영업정지 1개월 미만
 - 2차위반 :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
 - 3차위반 : 영업폐쇄

□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

- 본심의
 - 심의대상 : 우리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대형 광고물
 - 심의위원 : 8명(당연직 소관국장 포함 3명, 위촉직 5명)
 - 개최횟수 : 년12회(매월 1회)

○ 소심의

- 심의대상 : 관내 4차선이상 지역 및 여의도 전역에 설치되는
간판중 본심의에서 위임된 소형 광고물
- 심의위원 : 3명(당연직 소관과장 1명, 위촉직 2명)
- 개최횟수 : 년50회(매주 1회)

□ 현수막지정계시대 안전점검 및 보수

- 점검대상 : 지정계시대 29개소(130면)
- 점검방법 : 안전점검 전문기관(한국광고사협회)에 의뢰 조사
- 점검기간 : 2004. 6.25 ~ 6.30
- 보수일정 : 2004. 7. 1 ~ 7.10
- 사후관리 :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여부 수시 확인 조치

□ 대형광고물 안전점검

- 점검대상 : 대형옥상광고물 64개
- 점검방법 : 광고주, 안전점검요원 직원 등과 합동조사
- 점검기간 : 2004. 6.25 ~ 7.25(1개월)
- 사후관리 : 안전점검에 문제점이 있을시 광고주에 즉시 보수 토록 지시

2]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

2003년까지 정비완료된 2차선 이상노선에 대한 사후 관리와 병행, 이면도로를 신규 정비노선으로 선정, 최종정비 완료코자함

정비대상 및 기준

- 유 형 : 가로형, 돌출형, 세로형, 지주형, 창문형
- 기 준 : 무허가(신고)사항, 표시방법 위반 사항등

정비노선 및 예상 물량 - 5,000건

- 기 정비노선(사후관리) : 37개노선 1,000건
 - 2001년도 정비노선(6차선) : 13개노선 400건
 - 2002년도 정비노선(4차선) : 17개노선 500건
 - 2003년도 정비노선(2차선) : 7개노선 100건
- 2004년 신규 정비노선(이면도로) : 4,000건
 - 지하철역세권 등 : 4,000건

정비방법

- 노선별 담당자 지정 관리 및 정비
- 사전 충분한 안내 및 홍보로 자율 정비유도
- 신규 이면도로 자율 정비 동의 업소는 구에서 철거지원
- 미정비 업소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

철거용역비 : 140,000천원(35,000원×4,000건)

3]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

지속적인 정비로 인해 크게 감소 되었으나, 2004년도 총선 관련 불법광고물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 중점정비코자 함

- 정비대상 : 현수막, 벽보, 전단, 입간판, 에어라이트 등
- 중점 정비 사항
 - 선거관련 무신고 현수막게첨 및 벽보,전단 부착 살포 등
 - 음란 퇴폐 전단 배포사항
- 정비방법
 - 구 기동반(2개반6명)의 담당노선별 순찰 정비단속
 - 공공근로 활용 취약지역 벽보 등 지속 제거
 - 주 2회이상 새벽 및 야간 특별 단속 실시
- 위법행위의 예방 및 억제 조치
 - 선거관련 당사자 등에 대해 협조 공문 발송
 - 현 수거(제거)방법과 병행 과태료등 행정처분 강화
 - 미검인 공공현수막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홍보 및 사전 검인제 확행

4] 학교주변 클린존 지속 관리(정비)

그동안 학교 주변 통학로를 지속 관리하여 클린존환경이 현저히 개선 됨에따라 추후에도 지속적인 상시관리가 요망 됨

- 정בי지역 : 관내 16개교 학교주변 통학노선
- 정비내용 : 음란전단 등 불법광고물 제거
- 관리(정비)기간 : 상시관리
- 관리(정비)방법
 - 구기동반, 공공근로인력에 의한 순회 관리(정비)
 - 자기학교 주변 자율 정비위한 학생봉사활동 참여 유도
 - 청소년 유해광고물 배포자 현장 단속